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
번호 2001-107

제출년월일 : 2001. 12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·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
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

2. 주요골자

○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징수 방법

·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
현금으로 징수함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36백만원(국비 10, 시비 26) 기 확보

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

1)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추진현황 1부

2) 입법예고 (2001.2.16 - 3. 8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징수방법) ①~②(생략) <신설>	제5조(징수방법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 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한다.